

## 소방안전관련 교과목 및 소방관련학과에 관한 기준

(내무부 고시 제1994-95호, 1995년 1월 6일)

**제 1조** (목적) 이 기준은 소방법시행령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방화관리자의 선임요건중 교육기관에서 전공 또는 수료하여야 할 소방안전관련 교과목 및 소방관련학과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**제 2조** (소방안전관련 교과목 및 학과) ① 소방안전관련 교과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
1. 소방안전관리론
2. 소방유체역학 및 약제화학
3. 소방수리학
4. 위험물성상
5. 소방시설의 구조원리
6. 방폭공학 및 방화공학
7. 건축일반
8. 전기일반
9. 가스일반

② 소방안전 관련학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과로 한다.

1. 산업안전공학과
2. 전기공학과
3. 화학공학과
4. 기계공학과
5. 구급응급처치과
6. 건축공학과

**제 3조** (소방관련 교과목 및 학과인정 신청절차 등)

① 소방안전관련 교과목 및 학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졸업증명서, 학위수여증, 기타 총장 및 학장이 인정하여 관리학과 학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

### 류 1부

2.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등·초본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이를 확인하여 3일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소방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를 보관하여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.

④ 소방본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그 관리상태를 분기별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**제 1조** (시행일)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 2조** 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인정받은 소방관련 교과목 및 학과는 이 고시에서 정한 소방관련 교과목 및 학과로 본다.

20이상의 소방대상물이 통로·복도 또는 피트 등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볼 수 있는 기준

(내무부 고시 제1994-96호, 1995년 1월 6일)

**제 1조** (목적) 이 기준은 소방법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소방대상물을 통로·복도 또는 피트등(이하 "연결통로"라 한다)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볼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.

**제 2조** (연결통로로 연결된 하나의 소방대상물) 2이상의 소방대상물을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볼 수 있는 연결통로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1의 것으로 한다.

1. 연결통로가 인접건물과 천정으로 이어져 있는 내화구조의 복도 및 통로로서 다음 각호의 1의 것으로 한다.

<p>가. 복도의 길이가 6m 이상으로 벽이 없는 복도</p> <p>나. 복도의 길이가 10m 이상으로 벽높이가 바닥과 천정높이의 1/2미만인 복도</p> <p>2. 내화구조가 아닌 통로 및 복도로 연결된 경우</p> <p>3. 작업공정상 콘베이어(승강장, 화물용등)로 연결된 건축물(동일대지에 한함) 플랜트설비로서 작업공정라인(가연성가스, 위험물 및 자연성물질등)이 연결되어 있는 건축물(동일대지에 한함)</p> <p>4. 지하보도, 지하상가, 지하가동 지하통로로 연결된 경우</p> <p>5.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피트로 연결된 경우</p> <p><b>제 3조 (적용제외)</b>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볼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연결통로와 건축물사이에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이 되어 있는 것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자동방화샷터, 갑종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을 것</li> <li>나. 드랜쳐설비가 설치되어 자동방수 될 수 있을 것</li> <li>다. 연결부분의 통로·복도의 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것</li> <li>라. 지상에 있는 연결통로의 경우 연결부분의 전체가 불연재료의 것으로 설치되어 있을 것</li> </ol> </li> <li>2.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것외에 시·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민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것</li> </o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부 칙</b></p> <p><b>제 1조 (시행일)</b>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
---

### 특수장소의 용도변경시 화재위험이 높은 용도에서 낮은용도로 변경되는 요건에 관한 기준

(내무부 고시 제1994-97호, 1995년 1월 6일)

**제 1조 (목 적)** 이 기준은 소방법시행령 제33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장소의 용도변경시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여부를 결정하는 화재위험이 높은 용도에서 낮은 용도로 변경되는 요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**제 2조 (화재위험이 높은 용도에서 낮은 용도로 변경되는 요건)** 화재위험이 높은 용도에서 낮은 용도로 변경되는 요건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.

1. 건물의 구조, 설비가 화재 연소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폐난, 화재진압 활동이 용이하도록 변경될 때
2. 불특정다수인 이용시설(판매, 집회, 관람시설 등)에서 일정한 근무자가 이용하는 용도로 변경될 경우
3. 천정, 바닥, 벽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품의 양이 줄어 들었을 때
4. 근린생활시설(휴게음식점, 일반음식점, 노래연습장, 단란주점, 비디오방에 한한다), 위락시설, 관람·집회시설, 판매시설, 숙박시설, 노유자시설, 의료시설, 가스시설, 종교시설,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서 앞에서 제기하지 아니한 다른 용도로 변경될 때

### 부 칙

**제 1조 (시행일)**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에 관한 기준

(내무부 고시 제1994-98호, 1995년 1월 6일)

**제 1조 (목 적)** 이 기준은 소방기술기준규칙 제1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스프링클러설비등의 감시제어반에 표시되어야 하는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**제 2조 (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)** 급수개

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
1.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
2.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에서 동작의 유무 확인과 동작시험,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
3.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
4. 밸브의 완전개방시 수신기에서 확인표시등이 설치될 것

#### 부 칙

제 1조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③ 소방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제85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감지기는 제1항각호에서 정한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, 동조의 표에서 정한 부착높이 20미터 이상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
2. 불꽃감지기
3. 광전식감지기 중 분리형감지기

#### 부 칙

제 1조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소방시설용용 전선 및 단독형 화재감지기의 2차전지에 관한 기준

(내무부 고시 제1994-100호, 1995년 1월 6일)

### 소방시설용 특수감지기에 관한 기준

(내무부 고시 제1994-99호, 1995년 1월 6일)

제 1조 (목 적) 이 기준은 소방기술기준 규칙 제 18조제4항제4호 · 제54조제3호 · 제85조제1항 및 제9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용 특수감지기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 2조 (특수감지기의 종류 및 적용) ① 소방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제18조제4항제4호 · 제54조제3호 · 제85조제1항 및 제9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용 특수감지기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불꽃감지기
  2.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
  3. 다신호방식의 감지기
  4. 광전식감지기중 분리형감지기
- ②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, 유류취급장소등 급속한 연소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

제 1조 (목 적) 이 고시는 소방기술기준규칙 제 10조의2제2항 · 제4항, 제90조, 제96조의3 및 제 137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용 배선 및 단독형 감지기의 2차전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 2조 (내화, 내열배선) 소방기술기준규칙 제10조의2제2항 및 제137조에서 규정한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.

1. 내화배선
  - 가. 알루미늄 피복케이블
  - 나. CV케이블(가교폴리에틸렌 비닐케이블), CD케이블(Combined Duct Cable)
  - 다. 실리콘 고무절연전선
  - 라. 연파케이블
  - 마. 4불화에틸렌 절연전선
  - 바. 기타 공산품규정에 의거 동등이상의 내화 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
2. 내열배선
  - 가. 알루미늄 피복케이블
  - 나. CD케이블(Combined Duct Cable)
  - 다. 하이파른 절연전선

<p>라. 4불화에틸렌 절연전선 마. 실리콘, 절연전선 바. 연피케이블 사. 기타 공산품 품질규정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내열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.</p> <p><b>제 3조</b> (옥내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접속단자의 표지) 소방기술기준규칙 제1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내소화전 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과 같은 표지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단자에는 “소화전단자”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한다.</li> <li>2. 옥내소화전 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.</li> </ol> <p><b>제 4조</b> (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등) 소방기술기준규칙 제90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지기 회로의 배선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일반배선 사용시 제2조와 동일하여야 한다.</li> <li>2. 아날로그식, 다신호식감지기나 R형 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드선등을 사용할 것.</li> </ol> <p><b>제 5조</b> (단독형화재경보기의 2차전지) 소방기술기준규칙 제9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단독형 화재경보기의 2차전지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주전원으로 상용전원을 사용하는 단독형 화재경보기의 2차전지는 소방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·기구등의 성능시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.</li> <li>2. 주전원으로 건전지를 사용하는 단독형 화재경보기는 소방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검정품이어야 한다.</li> </o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<b>제 1조</b>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	<p>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옥외가스주입구를 설치하여야 할 대상물과 옥외가스주입구의 접결구 및 나사의 규격에 관한 기준</p> <p>(내부부 고시 제1994-101호, 1995년 1월 6일)</p> <p><b>제 1조</b> (목적) 이 기준은 소방기술기준규칙 제51조제3항이 규정에 의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옥외가스주입구를 설치해야 할 소방대상물과 옥외가스주입구의 규격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</p> <p><b>제 2조</b> (옥외가스 주입구를 설치해야 할 소방대상물) 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옥외가스주입구를 설치해야 할 대상물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공장 및 창고로서 소방법시행령 별표4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·취급하는 장소</li> <li>2. 소방법시행령 제28조제4항제5호의 장소로서 바닥면적 900제곱미터 이상인 것.</li> <li>3. 소방법시행령 제28조제4항제4호의 장소(주차대수 50대이상)</li> </ol> <p><b>제 3조</b> (옥외가스주입구의 규격등) ① 옥외가스주입구의 접결구 및 나사의 규격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접결구의 구조·모양·치수 “소방용기계기구 등의 검정기술기준”중 “송수관의 검정기술기준”에서 정하는 송수구로 할 것.</li> <li>2. 접결구는 직경 65mm이상의 암나사로 할 것.</li> <li>3. 주입구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0.5m 이상 1m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.</li> <li>4. 주입구에는 접결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캡과 가로·세로 각각 30cm이상의 적색 보호함을 설치하고 “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옥외가스 주입구”라는 표시를 할 것.</li> </o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<b>제 1조</b>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
---	--